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70 호 2022. 11. 08.(화)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522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…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523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… 11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524[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… 33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- 1522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, 구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실·국 및 담당관·과장의 명칭 변경(안 제2조)

- 1) 실·국의 명칭을 국으로 통일
- 2) 담당관·과장의 명칭을 과장으로 통일

나. 국의 명칭 변경

- 1) 기획조정실 → 기획재정국(안 제3조, 제4조)

다. 과의 명칭 변경

1)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항)

- 가) 기획예산담당관 → 기획예산과
- 나) 미디어정보담당관 → 미디어정보과
- 다) 경제일자리담당관 → 경제일자리과
- 라) 회계담당관 → 회계과
- 마) 징수담당관 → 세무1과
- 바) 부과담당관 → 세무2과

2)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5조제1항)

- 가) 주민소통과 → 주민자치과

3)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6조제1항)

- 가) 복지지원과 → 복지정책과
- 나) 환경미화과 → 자원순환과

라. 분장사무 조정

- 1) 인구정책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(안 제4조2항 제1호, 안 제6조제2항제3호)

3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출처

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
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”을“(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장 및 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실·국의 설치)”를“(국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기획조정실”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기획조정실에 두는 과)”를“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, 미디어정보과, 경제일자리과, 회계과, 세무1과, 세무2과를 둔다.

제4조 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모사업 총괄”을 “공모사업 총괄, 인구정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주민소통과”를 “주민자치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복지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, “환경미화과”를 “자원순환과”로 한다.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보육, 인구정책”을 “보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담당관·과”를 각각 “과”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과”로 한다.

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부서란 중 “징수담당관”을 “세무2과”로 한다.

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소관 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7항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실·국·소·관장 또는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·소·관장 또는 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⑪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1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3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5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실·국·소장”을 “국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실·국·소·관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·소·관장, 과장”으로 한다.

⑯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⑰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⑲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분임징수관 : 자원순환과장

3. 재무관 : 기획재정국장

4. 분임재무관 : 회계과장

⑳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 중 “실·국·소·관장 및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·소·관장 및 과장”으로 한다.

㉑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실·국, 담당관·과”를 “국, 과”로 한다.

㉒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<u>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</u>) ①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본청의 <u>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</u>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<u>담당관·과장</u> 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<u>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</u>) ① ----- ----- <u>국장 및 과장</u> ----- ----- <u>과장</u> ----- ----- 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<u>실·국의 설치</u>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조정실·행정지원국·복지환경국·안전건설국</u> 을 둔다.	제3조(<u>국의 설치</u>) ----- ----- <u>기획재정국</u> ----- -----.
제4조(<u>기획조정실에 두는 과</u>) ① <u>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, 미디어정보담당관, 경제일자리담당관, 회계담당관, 징수담당관, 부과담당관</u> 을 둔다.	제4조(<u>기획재정국에 두는 과</u>) ① <u>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, 미디어정보과, 경제일자리과, 회계과, 세무1과, 세무2과</u> 를 둔다.
② <u>기획조정실장은</u>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<u>기획재정국장</u>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1. 구정 종합기획·조정, 기구·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, 예산 편성·배정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 관리,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, 계약심사, 법제·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, 정책개발 및 <u>공모사업 총괄</u> 등에 관한 사무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, <u>주민소통과</u>, 문화체육과, 교육청소년과, 관광진흥과, 민원지적과를 둔다.</p>	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모사업 총괄, 인구정책</u>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<u>주민자치과</u>,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 복지환경국에는 <u>복지지원과</u>, 노인장애인과, 가족정책과, 농수산과, 환경위생과, <u>환경미화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여성아동, <u>보육, 인구정책</u>,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</p> <p>4. ~ 5.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<u>복지정책과</u> ----- ----- <u>자원순환과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----- 보육, ----- 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-1523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, 구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 개편 사항 반영

- 1) 실·국 및 담당관·과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)
 - 가) 실·국 → 국, 담당관·과 → 과
- 2) 국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3조)
 - 가) 기획조정실 → 기획재정국
- 3) 과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 - 가) 기획예산담당관 → 기획예산과
 - 나) 미디어정보담당관 → 미디어정보과
 - 다) 경제일자리담당관 → 경제일자리과
 - 라) 회계담당관 → 회계과

- 마) 징수담당관 → 세무1과
- 바) 부과담당관 → 세무2과
- 사) 주민소통과 → 주민자치과
- 아) 복지지원과 → 복지정책과
- 자) 환경미화과 → 자원순환과

나. 분장사무 조정(별표)

1)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안 별표 1)

- 가)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
- 나) 세무부서 간 담당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사항 반영
- 다) 신설사무 및 이관사무 등 변경사항 반영
- 기획예산과 “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” 삭제, 인구정책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 반영(가족정책과 → 기획예산과)
- 총무과 공무원 관련 용어 수정사항 반영
 - “현업실무원 및 도로보수원” 삭제, 환경미화원 → 환경공무직
- 주민자치과 “청원에 관한 사항” 신설
- 어촌체험마을,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, 산하해변 물놀이장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(관광진흥과 → 농수산과) 반영
- 복지정책과 “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” 신설
- 건설과 “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” 신설
-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(교통행정과 → 도시과) 반영
- 건축주택과 “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” 신설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4조
다.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라. 제 출 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
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장, 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담당관·과장은 소속실·국장”을 “과장은 소속 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장 제1절의 제목 “기획조정실”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기획조정실)”을 “(기획재정국)”으로, 같은 조 중 “실장”을 “국장”으로, “기획예산담당관·미디어정보담당관·경제일자리담당관·회계담당관·징수담당관·부과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·미디어정보과장·경제일자리과장·회계과장·세무1과장·세무2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주민소통과장”을 “주민자치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복지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, “환경미화과장”을 “자원순환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담당관·과의 사무분장)”을 “(과의 사무분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과”로 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하고, 기획예산과 분장사무란 중 제89호를 삭제하고,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0. 인구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미디어정보담당관”을 “미디어정보과”로, “경제일자리담당관”을 “일자리경제과”로, “회계담당관”을 “회계과”로 하고, 징수담당관란과 부과담당관란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별표 회계과란 다음에 세무1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세무1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.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. 세입의 환급 및 총당에 관한 사항 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0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1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12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13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14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.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 16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 17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18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19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
------	--

- | | |
|--|--|
| | 21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
22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
23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
24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
25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6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27.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 |
|--|--|

별표 1의 세무1과란 다음에 세무2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세무2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 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 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8.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2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3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14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15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16.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17.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8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 19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20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21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23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4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 25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 26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
------	--

- 27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
- 28. 지난연도 세외수입(일반회계)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- 29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- 30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총무과 분장사무란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4호 중 “환경미화원”을 “환경공무직”으로 한다.

- 20. 공무원 채용 및 배치전환(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 포함)에 관한 사항

별표 1 부서명란 중 “주민소통과”를 “주민자치과”로 하고,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란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3. 청원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관광진흥과 분장사무란 중 제31호, 제3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복지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복지정책과 분장사무란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7.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가족정책과 분장사무란 중 제51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 농수산과 분장사무란에 제103호부터 제10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3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104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
- 105.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환경미화과”를 “자원순환과”로 하고, 같은 별표의 건설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.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도시과 분장사무란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0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란 중 제32호를 삭제하고, 같은 별표 건축주택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회계담당관”을 “회계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”를 “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호나목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회계담당관”을 “회계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담당관, 주민소통과, 회계담당관, 총무과, 안전

총괄과, 미디어정보담당관, 징수담당관, 부과담당관”를 “기획예산과, 주민자치과, 회계과, 총무과, 안전총괄과, 미디어정보과, 세무1과, 세무2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복지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환경미화과, 경제일자리담당관”을 “자원순환과, 일자리경제과”로 한다.

③ 울산광역시 북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(7-2) 중 “부과담당관”을 각각 “세무1과”로 한다.

⑦ 울산광역시 북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3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각각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한다.

⑧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울산광역시 복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및 제12호와 제4조제2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실·국장”을 각각 “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부서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<u>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</u>의 직급,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<u>담당관·과장</u>의 사무분장 등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국장, 과장</u>----- -----<u>과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직무) <u>담당관·과장은</u> 소속실·국장을 보좌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2조(직무) <u>과장은</u> 소속 국장을 ----- -----.</p>
<p>제1절 <u>기획조정실</u></p>	<p>제1절 <u>기획재정국</u></p>
<p>제3조(<u>기획조정실</u>)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, <u>기획예산담당관·미디어정보담당관·경제일자리담당관·회계담당관·징수담당관·부과담당관</u>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	<p>제3조(<u>기획재정국</u>) <u>국장</u>----- ----- <u>기획예산과장·미디어정보과장·경제일자리과장·회계과장·세무1과장·세무2과장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행정지원국)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, <u>총무과장·주민소통과장·문화체육과장·교육청소년과장·관광진흥과장</u>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<u>민원지적과장</u>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	<p>제4조(행정지원국) ----- ----- <u>주민자치과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복지환경국)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, <u>복지지원과장</u>은 지</p>	<p>제5조(복지환경국) ----- ----- <u>복지정책과장</u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방행정사무관으로, 노인장애인과장 · 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, 환경위생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 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, <u>환 경미화과장</u>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·지방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<p>제7조(담당관·과의 사무분장) 구 본 청에 두는 <u>담당관·과의</u>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자원순 환과장</u>-----</p> <p>제7조(과의 사무분장) ----- -----<u>과</u>----- -----</p>

신·구 별표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1]		[별표 1]	
<u>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제7조 관련)</u>		<u>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제7조 관련)</u>	
부서명	분장사무	부서명	분장사무
<u>기획예산담당관</u>	1. ~ 88. (생략) 89. 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90. ~ 99. (생략) <신설>	<u>기획예산과</u>	1. ~ 88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90. ~ 99. (현행과 같음) 100. 인구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<u>미디어정보담당관</u>	1. ~ 34. (생략)	<u>미디어정보과</u>	1. ~ 34. (현행과 같음)
<u>경제일자리담당관</u>	1. ~ 72. (생략)	<u>경제일자리과</u>	1. ~ 72. (현행과 같음)
<u>회계담당관</u>	1. ~ 30. (생략)	<u>회계과</u>	1. ~ 30. (현행과 같음)
<u>징수담당관</u>	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. 세입의 환급 및 총당에 관한 사항 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	<삭제>	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10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		<삭 제>
	1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		<삭 제>
	1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8.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1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2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3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4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5.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6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7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부과담당관	1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2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3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4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5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6.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7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	<삭 제>	
	8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9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0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1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2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3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4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5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6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	<삭 제>	
	17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	<삭 제>	
<신 설>	<신 설>	세무1과	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 >		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4.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8. 세입의 환급 및 총당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0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1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2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3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4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5.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6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	< 신 설 >		17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8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9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		<p>20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</p> <p>21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</p> <p>22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</p> <p>23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</p> <p>24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25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6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27.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</p>
<신 설>	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	세무2과	<p>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</p> <p>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</p> <p>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</p> <p>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</p> <p>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</p> <p>8.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</p> <p>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</p>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 >		11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2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3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4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5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6.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7.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8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	< 신 설 >		19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0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1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2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3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4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5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6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
	< 신 설 >		27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8. 지난연도 세외수입(일반회계)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 > < 신 설 >		29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30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총무과	1. ~ 19. (생 략) 20. <u>공무직 채용(현업실무원 및 도로보수원의 배치전환, 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)에 관한 사항</u> 21. ~ 33. (생 략) 34.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(<u>환경미화원 제외</u>) 35. ~ 40. (생 략)	총무과	1. ~ 19. (현행과 같음) 20. <u>공무직 채용 및 배치전환(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 포함)에 관한 사항</u> 21. ~ 33. (생 략) 34.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(<u>환경공무직 제외</u>) 35. ~ 40. (생 략)
주민소통과	1. ~ 42. (생 략) < 신 설 >	주민자치과	1. ~ 42. (현행과 같음) 43. 청원에 관한 사항
관광진흥과	1 ~ 30. (생 략) 31. <u>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</u> 32. ~ 34. (생 략) 35. <u>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36. ~ 44. (생 략)	관광진흥과	1 ~ 30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32. ~ 3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36. ~ 44. (현행과 같음)
복지지원과	1 ~ 66. (생 략) < 신 설 >	복지정책과	1 ~ 66. (현행과 같음) 67. <u>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</u>
가족정책과	1 ~ 50. (생 략) 51. <u>인구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	가족정책과	1 ~ 50. (생 략) <삭 제>
농수산과	1. ~ 102. (생 략)	농수산과	1. ~ 102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u>< 신 설 ></u> <u>< 신 설 ></u> <u>< 신 설 ></u>		103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4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 105.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
환경미화과	1. ~ 31. (생 략)	자원순환과	1. ~ 31. (현행과 같음)
건설과	1. ~ 53. (생 략) <u>< 신 설 ></u>	건설과	1. ~ 53. (현행과 같음) 54.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
도시과	1. ~ 39. (생 략) <u>< 신 설 ></u>	도시과	1. ~ 39. (현행과 같음) 40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
교통행정과	1. ~ 31. (생 략) 32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33. (생 략)	교통행정과	1 ~ 3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 ></u> 33. (현행과 같음)
건축주택과	1. ~ 53. (생 략) <u>< 신 설 ></u>	건축주택과	1. ~ 53. (현행과 같음) 54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·군·구의 실장·국장·담당관·과장 등의 직급기준)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장·국장·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□ 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2조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본청의 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·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,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- 1524호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업무를 조정하고,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세부사무별 전결권자 지정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기구 명칭 조정사항 반영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
- 1) 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 → 국장, 과장

나.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(안 별표 1)

1) 공통사항

- 행정기구 명칭 조정사항 반영
-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전결사항 조정(구청장 → 국장)

2) 기획예산과

-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
- 인구정책 관련 전결사항 이관·신설

3) 미디어정보과

- 행정기구 명칭 조정사항 반영
-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전결사항 신설

4) 경제일자리과, 회계과 :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

5) 징수담당관, 부과담당관 : 삭제

6) 세무1과, 세무2과 : 신설

- 세무부서별 담당 조정에 따라 전결사항 이관·신설

7) 총무과

- 단위업무와 세부사무명 통일(공무원단체 → 공무원노조)
- 공무원 임용 및 전보에 관한 전결사항 신설

8) 주민자치과

-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
- 공공갈등 및 청원 관련 전결사항 신설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의 다수인 관련 민원의 정의에 따라 “5인 미만”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민원” 조항 삭제

9) 문화체육과

- 생활문화센터 휴관 전결사항 조정(구청장 → 과장)

10) 관광진흥과

- 수상레저기구, 어촌체험마을 관련 전결사항 삭제

11) 복지정책과 :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

12) 노인장애인과

- 위안행사 대상자 중 여성·아동 삭제

13) 가족정책과

- 인구정책 관련 전결사항 삭제

14) 농수산과

- 수상레저기구, 어촌체험마을 관련 전결사항 이관·신설

15) 자원순환과 :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

16) 안전총괄과

- 산업재해 예방, 산업안전보건관리, 중대재해 관련 전결사항 신설

17) 건축주택과

-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전결사항 조정(국장 → 부구청장)
※ 위원장 부구청장

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, 제117조제1항

나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2항

4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라. 제출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
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

시 복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항 외의 부분 중 “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장, 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장, 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실·국”을 “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, 다른 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, 다른 국장, 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공통사항 및 부서별 기안 및 전결 구분 중 “담당관·과장”과 “실·국장”을 각각 “과장”과 “국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공통사항 제1호란 중 나목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으로 하고, 같은 호란 중

다목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공통사항 제5호란 중 다목 “실·과·소·동장이상”을 “과·소·동장 이상”으로 한다.

별표 1 공통사항 제7호란 가목 중 “실·과내”를 “부서 내”로 하고, 같은 호란 다목 중 “실·국간”을 “국 간”으로 한다.

별표 1 공통사항 제8호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기간제근로자	가.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결과 보고	기안			○		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	--	---	--	--

별표 1 중 “기획조정실”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하고,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하고, 기획예산과 제7호란 가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조직관리	가. 기구 직제 조정 및 사무분장						
	(1) 기구설치·폐지 등 조정에 관한 사항		기안				○
	(2)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	기안				○	
	나. 정원관리						
	(1) 정원 조례·규칙·규정 제정 및 폐제	기안					○
	(2) 정원 승인 신청	기안					○
	(3) 정원 직렬(직급) 조정						
	(가) 6급 이상	기안					○
	(나) 7급 이하	기안					○
	(4) 기관 및 부서별 정원 조정	기안					○
(5) 정원관리 통계 및 실태 조사	기안		○				
11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가. 인구정책 시책 발굴		기안				○
	나.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	기안				○	
	다.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

별표 1 중 “미디어정보담당관”을 “미디어정보과”로 하고, 미디어정보과 제24호란과 제2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	가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	기안			○		
	나. 데이터 분석 및 활용	기안		○			
25.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	가.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	기안			○		
	나.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	기안		○			
	다.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	기안		○			

별표 1 중 “경제일자리담당관”을 “경제일자리과”로 하고, “회계담당관”을 “회계과”로 하고, “징수담당관”과 “부과담당관”을 각각 삭제하고, 회계과 다음에 “세무1과”와 “세무2과”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○ 세무1과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	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	부 구 청 장
		실 무 자	담 당				
1. 세정 일반	가. 지방세정 총괄		기안			○	
	나.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	기안			○		
	다. 지방세 제도개선	기안		○			
	라. 세무공무원 증명서 발급	기안		○			
2. 금고 관리	가.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체결		기안			○	
	나.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및 감독	기안		○			
3. 기부금품 관리	가. 기부금품 모집 통제		기안			○	
4. 세무전산	가. 지방세 전산화 시책추진	기안			○		
	나. 지방세 전산실 기기 점검 및 운영	기안	○				
	다. 지방세 체납·통계 프로그램 운영	기안		○			
	라. 지방세 전산자료 관리	기안		○			
5. 세입 관리 및 결산	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	기안			○		
	나. 지방세 세입 결산	기안			○		
	다. 국세 세입 결산	기안			○		
	라.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	기안	○				
	마. 세입부 정리	기안	○				
6. 지방세 통계 및 세입 월보	가. 지방세 통계연감 총괄	기안		○			
	나. 지방세 세입 월보	기안		○			
	다. 국세 세입 월보	기안		○			
7. 지방세 수납 사항 정리	가. 영수필통지서 관리	기안	○				
	나. 전산징수부 관리	기안	○				
8.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	가. 신용카드납부제 운영	기안		○			
	나.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	기안		○			
9. 지방세환급금 관리	가. 환급금 통지	기안	○				
	나.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	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구청장	
		실무자	담당				
	다. 환급금 지급명령원부	기안		○			
10. 채권 관리	가. 채권 현재액 보고	기안			○		
11. 고향사랑기부제 운영	가.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종합기획	기안					○
	나.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·운영	기안					○
	다.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	기안				○	
12. 지방세 부과 및 징수	가. 세목별 정기·수시분 부과	기안		○			
	나. 연부취득물건 자료수집 및 부과	기안		○			
	다. 자동차세 년·분납신고 처리	기안		○			
	라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	○			
	마. 징수유예						
	(1) 징수유예(2,000만원 이상)		기안		○		
	(2) 징수유예(2,000만원 미만)		기안	○			
바. 물납, 분납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	
13. 지방세 부과 관련 자치법규 운영	가. 제·개정에 관한 사항		기안				○
14. 지방세 통계	가.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	기안		○			
15. 지방세 소송	가.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		기안		○		
16. 위원회 운영	가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		기안			○	
17. 시가표준액 결정	가.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		기안				○
18. 지방세 구제	가. 구세 이의신청 처리		기안		○		
	나. 구세 심사청구 진달		기안		○		
	다.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		기안	○			
19. 세무민원처리	가. 비과세·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	기안		○			
	나.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	기안		○			
	다. 납기연장 신청 처리	기안		○			
	라.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	기안		○			
20. 비과세·감면결정	가. 1억원 이상	기안			○		
	나. 1억원 미만	기안		○			
21. 지방세 신고 납부처리	가.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	
	나.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	
22. 고지서 송달	가.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	기안		○			
	나.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	기안		○			
23. 과세자료 조사	가.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	기안		○			
	나. 과세자료 이동·변동사항 정비	기안	○				
	다. 토지·건축물 현황 일제조사	기안		○			
24. 유관기관 협조업무	가. 재산조회 회신	기안		○			
	나. 과세자료 조회, 협조 요청	기안		○			
25. 지방세 분야 비리방지	가. 지방세 비리방지 계획수립		기안				○
	나. 부과·징수 취약분야 자체점검		기안		○		
26. 세무조사	가.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		기안				○
	나.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정		기안		○		
	다. 비과세·감면사항 사후조사	기안		○			
	라. 탈루세원 자료수집·조사	기안		○			
	마. 세무조사 규칙 제·개정		기안				○
27.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대장관리	가. 세무조사 결과 통지	기안		○			
	나. 세원 조사실적 보고(월·분기별)	기안		○			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구청장	
		실무자	담당				
	다. 법인대장 작성관리	기안		○			
28. 주택가격업무 기획	가. 주택가격조사 종합계획 수립		기안		○		
	나. 주택가격조사 종합 검토	기안		○			
29. 주택가격관리	가. 표준주택가격 관리	기안		○			
	나. 주택가격 조사	기안		○			
	다.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	기안		○			
	라.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	기안					○
	마.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	○					
	바.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운영		기안				○
	사.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서 작성·검토	기안		○			
30. 주택가격 전산화	가. 주택가격전산화 및 현황도 작성	기안		○			
	나. 주택가격자료 처리 및 변동사항 정리	기안		○			
	다. 성과품작성 제출	기안		○			
31. 주택가격 이의신청	가.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	기안		○			
32. 주택가격 열람	가. 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 통보	기안		○			
33. 징수·감액 결의	가. 징수결의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	나. 감액결의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	다. 가산금·증가산금 조정	기안		○			

○ 세무2과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구청장	
		실무자	담당				
1. 체납세 징수 기획	가.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		기안				○
	나. 체납세 징수 목표액 책정	기안			○		
	다. 지방세 징수관련 제도개선	기안		○			
	라. 체납액 현황파악 및 분석	기안		○			
2. 체납세 일반	가.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	기안		○			
	나.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	기안		○			
	다. 체납세 일보 및 월보	기안		○			
	라. 영수원부 관리	기안		○			
	마. 체납세 징수독려 및 기타 일반사항	기안		○			
	바. 체납관련 조례·규칙 제·개정사항		기안				○
3. 체납자 규제	가. 체납자 관허사업제한	기안		○			
	나.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	기안		○			
	다. 조세범처벌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
	라.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		기안	○			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구청장	
		실무자	담당				
4. 체납처분	가. 체납자 재산조회(조사)	기안		○			
	나.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	기안		○			
	다.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
	라. 압류관련 각종 공부 관리	기안		○			
	마. 체납처분비 조정 및 징수						
	(1) 체납처분비 조정에 관한 사항	기안					○
(2) 체납처분비 징수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	
5. 체납자 관리	가. 고액체납자 관리		기안	○			
	나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	○			
	다. 체납자료 관리 및 전송	기안		○			
6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가. 번호판 영치 계획	기안		○			
	나. 번호판 영치 및 반환	기안	○				
	다. 미반환 번호판 정리	기안		○			
7. 정리보류·시효완성 정리	가. 정리보류·시효완성정리결의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나. 정리보류자 사후관리	기안		○				
8. 지방세 제증명 발급	가.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접수 및 발급	○					
	나. 납세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발급	○					
9. 세정 일반	가.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	기안			○		
	나. 지방세 제도개선	기안		○			
10. 지방세 부과 및 징수	가. 세목별 정기·수시분 부과	기안		○			
	나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	○			
	다. 징수유예						
	(1) 징수유예(1,000만원 이상)		기안		○		
(2) 징수유예(1,000만원 미만)		기안	○				
11.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운영	가. 제·개정에 관한 사항		기안				○
12. 지방세 통계	가.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	기안		○			
13. 지방세 소송	가.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		기안		○		
14. 지방세 구제	가. 구세 이의신청 처리		기안		○		
	나. 구세 심사청구 진달		기안		○		
	다.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		기안	○			
15. 세무민원처리	가. 비과세·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	기안		○			
	나.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	기안		○			
	다. 납기연장 신청 처리	기안		○			
	라.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	기안		○			
16. 비과세·감면결정	가. 1억원 이상	기안			○		
	나. 1억원 미만	기안		○			
17. 지방세 신고 납부 처리	가.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	
	나.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	
18. 고지서 송달	가.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	기안		○			
	나.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	기안		○			
19. 과세자료 조사	가.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	기안		○			
	나. 과세자료 이동·변동사항 정비	기안	○				
20. 세입 관리 및 결산	가. 교부금·보조금·전입금 세입정리	기안		○			
	나.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	기안	○				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구청장	
		실무자	담당				
	다. 세입부 정리	기안	○				
21. 세외수입업무	가. 세외수입 총괄 지도·감독		기안		○		
	나. 수수료·사용료 현실화 추진		기안				○
	다. 세외수입 통계작성	기안		○			
	라. 세외수입 세입전망 분석		기안		○		
22. 수입증지 관리	가. 수입증지 수급운영 관리	기안		○			
	나. 수입증지 수불관리	기안	○				
23. 세외수입 관리	가. 세외수입 세입 결산	기안			○		
	나. 세외수입 징수 월보	기안		○			
	다.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관리	기안		○			
	라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	기안		○			
	마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	기안		○			
24.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	가. 신용카드납부제 운영	기안		○			
	나.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	기안		○			
25. 세외수입 환급금 관리	가. 환급금 통지	기안	○				
	나.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	다. 환급금 지급명령원부	기안		○			
26. 징수·감액 결의	가. 징수결의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	나. 감액결의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	다. 가산금·증가산금 조정	기안		○			

별표 1 중 총무과 제21호란 “공무원단체 지원”을 “공무원노조 지원”으로 하고, 제34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4. 공무원 등 관리	가. 공무원 관리						
	(1) 채용계획 및 임용		기안				○
	(2) 전보	기안			○		
	(3) 징계 처분	기안					○
	(4) 현황 관리 및 보수지급	기안		○			

별표 1 중 “주민소통과”를 “주민자치과”로 하고, 주민자치과 제2호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민원 접수 및 처리	다. 민원서류 중 다수인(5인 이상) 관련 민원	기안					○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	--	--	--	---

같은 표 중 주민자치과 제39호란과 제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9. 공공갈등 관리	가.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 수립	기안					○
	나.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	기안					○
	다. 갈등조정협의회 구성·운영	기안					○
	라. 공공갈등 영향분석	기안					○
	마. 공공갈등 관리 역량강화 교육	기안		○			
	바. 공공갈등 관리 및 점검	기안		○			
40. 청원제도 운영	가. 청원서 접수·배부	기안		○			
	나. 청원심의회 구성·운영	기안				○	
	다. 기타 청원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

별표 1 중 문화체육과 제63호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63.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	나. 시설 휴관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	---	--	--	--

별표 1 중 관광진흥과 제11호란과 제1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 중 “복지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표 중 노인장애인과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각종 위안행사 계획	가. 구단위 노인 위안행사 개최	기안					○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	--	--	--	---

별표 1 중 가족정책과 제19호란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중 농수산과 제119호란 부터 제1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9. 수상레저기구	가. 수상레저기구 등록, 변경등록 사항	기안		○			
	나.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	기안		○			
	다.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	
	라. 수상레저사업(내수면) 등록, 변경등록	기안		○			
120. 어촌체험마을	가.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	기안					○
	나. 사업추진, 운영 및 사후관리	기안		○			
	다.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	기안					○

별표 1 중 “환경미화과”를 “자원순환과”로 한다.

별표 1 중 안전총괄과 제63호란부터 제6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3. 산업재해 예방	가.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	기안					○
	나. 산업재해 예방 홍보 업무 추진	기안		○			
	다.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	기안				○	
	라.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	기안		○			
64. 산업안전보건 관리	가.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	기안					○
	나. 산업안전보건관리 세부운영 계획 수립	기안				○	
	다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	기안				○	
	라.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	기안		○			
65.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	가. 중대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	기안					○
	나. 중대재해 세부운영 계획 수립	기안				○	
	다.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	기안					○
	라.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	기안				○	
	마.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	기안		○			
	바. 중대재해 관련 일반사항	기안		○			

별표 1 중 건축주택과 제41호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1. 공동주택 관리법에 관한 사무	나.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	기안					○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	--	--	--	---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결재권의 배분 원칙) 구청장, 부구청장, 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,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·감독</p> <p>4. (생략)</p> <p>③ 실·국장의 전결사항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실·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담당관·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·감독</p> <p>④ 담당관·과장의 전결사항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4조(전결사항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,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</p>	<p>제3조(결재권의 배분 원칙) ----- ----- 국장, 과장 ----- -----.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국장, 과장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국장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국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과장----- -----</p> <p>④ 과장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전결사항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전결하고,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, 부구청장 또는 <u>실·국장</u> 및 보건소장, 사업소 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.</p>	<p>----- ----- <u>국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전결사항의 합의)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청장에게 관계되는 업무는 <u>기획예산담당관</u>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.</p> <p>② 구청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<u>기획예산담당관, 다른 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</u>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<u>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</u>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6조(전결사항의 합의) ① ----- ----- -----<u>기획예산과장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기획예산과장, 다른 국장, 과장</u>----- ----- <u>국장, 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신·구 별표 대비표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【별표 1】 <input type="checkbox"/> 공통사항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(제4조제1항 관련)							【별표 1】 <input type="checkbox"/> 공통사항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(제4조제1항 관련)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실·국장	부구청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
		실무자	담당							실무자			담당
1. 복무 (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, 출장 등)	가. 부구청장 나. 실·국장 다. 담당관·과장 라. 6급 이하 직원	기안				○	1. 복무 (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, 출장 등)	가. 부구청장 나. 국장 다. 과장 라. 6급 이하 직원	기안				○
2. ~ 4. (생략)							2. ~ 4. (현행과 같음)						
5. 회의소집	가.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나. 실·과·소·동장 이상 다. (생략)		기안			○	5. 회의소집	가.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나. 과·소·동장 이상 다. (현행과 같음)		기안			○
6. (생략)							6. (현행과 같음)						
7. 기타 일반사항	가. 실·과내 직원의 배치 및 분장사무 조정 나. 실·국간의 협의사항 다. ~ 더. (생략)	기안		○			7. 기타 일반사항	가. 부서 내 직원의 배치 및 분장사무 조정 나. 국 간의 협의사항 다. ~ 더. (현행과 같음)	기안		○		
8. 기간제근로자	가.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결과 보고 나. (생략)	기안				○	8. 기간제근로자	가.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결과 보고 나. (현행과 같음)	기안			○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조정실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기획예산담당관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재정국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기획예산과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실·국장	부구청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
		실무자	담당							실무자			담당
1. ~ 6. (생략)							1. ~ 6. (생략)						
7. 조직관리	가. 기구 직제 조정 및 사무분장 (1) 기구설치·폐지 등 조정에 관한 사항 (2) 국·실·과 사무분장 조정 나. 정원관리	기안	기안			○	7. 조직관리	가. 기구 직제 조정 및 사무분장 (1) 기구설치·폐지 등 조정에 관한 사항 (2)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나. 정원관리 (1) 정원 조례·규칙·규정 제정 및 개폐	기안	기안			○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규 장	부 구 청 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	(1) 정원 조례·규칙·규정 제정 및 폐기 (2) 정원 승인 신청 (3) 정원 직렬(직급) 조정 (가) 6급 이상 (나) 7급 이하 (4) 실·과·소·동별 정원 조정 (5) 정원관리 통계 및 실태 조사 다. ~ 마. (생 략)	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						(2) 정원 승인 신청 (3) 정원 직렬(직급) 조정 (가) 6급 이상 (나) 7급 이하 (4) 기관 및 부서별 정원 조정 (5) 정원관리 통계 및 실태 조사 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	기안 기안 기안 기안					○ ○ ○ ○	
8. ~ 111. (생 략)							8. ~ 111. (현행과 같음)								
<신 설>							112.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가. 인구정책 시책 발굴 나.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다.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기안 기안 기안					○ ○ ○	
○ 미디어정보담당관							○ 미디어정보과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규 장	부 구 청 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1. ~ 23. (생 략)							1. ~ 23. (생 략)								
<신 설>							24.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	가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나. 데이터 분석 및 활용	기안 기안					○ ○	
<신 설>							25.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	가.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나.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다.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	기안 기안 기안					○ ○ ○	
○ 경제일자리담당관 (생 략)							○ 경제일자리과 (현행과 같음)								
○ 회계담당관 (생 략)							○ 회계과 (현행과 같음)								
○ 징수담당관							<삭 제>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제						
		담 당 자		담 당 원 · 과 장	실 · 국 장							부 구 청 장
		실 무 자	담 당									
1. 세 정 기 획	가. 세무행정의 종합기획		기안							○		
	나. 지방세 업무 연찬회		기안			○						
	다. 체납세 징수 목표액 책정	기안				○						
	라. 지방세 징수관련 제도개선	기안			○							
	마. 세무공무원 증명서 발급	기안			○							
2. 금 고 관 리	가. 구 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체결		기안							○		
	나. 구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및 감독	기안			○							
3. 기 부 금 품 관 리	가. 기부금품 모집 통제		기안						○			
4. 세 무 전 산	가. 지방세 전산화 시책추진	기안				○						
	나. 지방세 전산실 기기 점검 및 운영	기안	○									
	다. 지방세 체납·통계 프로그램 운영	기안			○							
	라. 지방세·세외수입 전산자료 관리	기안			○							
5. 세 입 관 리	가.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	기안				○						
	나. 은행일시 차입		기안						○			
	다. 교부금·보조금·전입금 세입정리	기안			○							
	라. 회계간 자금의 일시 전출 및 환입		기안			○						
	마. 세계 잉여금 결산전 이입	기안			○							
6. 세 입 결 산	가. 지방세 세입 결산	기안				○						
	나. 국세 세입 결산	기안				○						
	다.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전 작성	기안	○									
	라. 세입부 정리	기안	○									
7. 지 방 세 통 계 및 징 수 월 보	가. 지방세 통계연간 총괄	기안			○							
	나. 지방세 징수 월보	기안			○							
	다. 국세 징수 월보	기안			○							
8. 지 방 세 수 납 사 항 정 리	가. 영수필통지서 전산소인 및 정리 보관	기안	○									
	나. 세입일계표 작성 및 일일결산	기안	○									
	다. 징수부 및 체납부 관리(현·과년도)	기안	○									
9. 신 용 카 드 납 부 제 운 영	가. 신용카드납부제 운영	기안			○							
	나.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	기안			○							
10. 환 급 금 관 리	가. 환급금 통지	기안	○									
	나.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											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				
		담 당 자	실 무 자	담 당	담 관 · 과 장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	○		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	○					
	다. 환급금 지급명령원부	기안			○					
11. 체납세 징수 기획	가.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		기안							○
	나. 체납액 현황 파악 및 분석	기안			○					
	다. 징수기동반 편성 및 운영		기안		○					
12. 체납세 일반	가.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	기안			○					
	나.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	기안			○					
	다. 체납세 일보 및 월보	기안			○					
	라. 영수원부 관리	기안			○					
	마. 체납세 징수독려 및 기타 일반사항	기안			○					
	바. 체납관련 조례·규칙 제·개정사항		기안							○
13. 체납자 규제	가. 체납자 관허사업제한	기안			○					
	나.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	기안			○					
	다. 조세법처벌에 관한 사항	기안			○					
	라.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		기안		○					
14. 체납처분	가. 체납자 재산조회(조사)	기안			○					
	나.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	기안			○					
	다.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항	기안			○					
	라. 압류관련 각종 공부 관리	기안			○					
	마. 체납처분비 조정 및 징수									
	(1) 체납처분비 조정에 관한 사항	기안								○
	(2) 체납처분비 징수에 관한 사항	기안			○					
15. 체납자 관리	가. 고액체납자 관리		기안		○					
	나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		○					
	다. 체납자료 관리 및 전송	기안			○					
16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가. 번호판 영치 계획	기안			○					
	나. 번호판 영치 및 반환	기안	○							
	다. 번호판 미반환자 조치	기안			○					
17. 결손처분	가. 결손 결의 결정			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	○		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	○					
	나. 결손처분자 사후관리	기안			○					
18. 지방세 제증명	가.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접수 및 발급	○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제						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						부 구 청 장
		실 무 자	담 당									
발급	나. 납세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발급	○										
19. 세외수입업무	가. 세외수입 총괄 지도·감독		기안		○							
	나. 수수료·사용료 현실화 추진		기안							○		
	다. 세외수입 통계작성	기안		○								
20. 수입증지 관리	가. 수입증지 수급운영 관리	기안		○								
	나. 수입증지 수불관리	기안	○									
21. 세외수입 관리	가. 세외수입 세입 결산	기안			○							
	나. 세외수입 징수 월보	기안		○								
	다.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관리	기안		○								
	라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	기안		○								
22. 채권 관리	가. 채권 현재액 보고	기안			○							
	23. 징수·감액 결의	가. 징수결의				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			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					
	나. 감액결의					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			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					
	다. 가산금·증가산금 조정	기안		○								

<삭 제>

○ 부과담당관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제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
1. 부과행정 기획	가. 지방세 부과행정의 기획		기안			○
	나. 지방세 업무 연찬회		기안		○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						
		담 당 자	실 무 자	담 당	담 당 관 · 과 장							
	다.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	기안			○							
	라. 지방세 부과관련 제도개선	기안			○							
2. 지방세 부과 및 징수	가. 세목별 정기·수시분 부과	기안			○							
	나. 연부취득물건 자료수집 및 부과	기안			○							
	다. 자동차세 년·분납신고 처리	기안			○							
	라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		○							
	마. 징수유예											
	(1) 징수유예(1,000만원 이상)		기안		○							
	(2) 징수유예(1,000만원 미만)		기안		○							
	바. 물납, 분납의 허가 신설	기안			○							
3. 지방세 부과 관련 자치법규 운영	가. 방침결정 및 개정안 확정		기안								○	
	나. 입법예고		기안		○							
	다. 법령 제·개정내용 직원교육		기안		○							
4. 지방세 통계	가.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	기안			○							
5. 지방세 소송	가.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		기안		○							
6. 위원회 운영	가. 지방세 심의 위원회 운영		기안							○		
7. 과세표준액 결정	가.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		기안									○
8. 지방세 구제	가. 구세 이의신청 처리		기안		○							
	나. 구세 심사청구 진달		기안		○							
	다.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		기안		○							
9. 세무민원처리	가. 비과세·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	기안			○							
	나.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	기안			○							
	다. 납기연장 신청 처리	기안			○							
	라.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	기안			○							
10. 징수·감액 결의	가. 징수결의					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			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	○							
	나. 감액결의					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						
		담 당 자	실 무 자	담 당	담 당 관 · 과 장					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					
	다. 가산금·증가산금 조정	기안		○								
11.비과세·감면결정	가. 1억원 이상	기안			○							
	나. 1억원 미만	기안			○							
12.자진납부처리	가.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						
	나.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						
13.고지서 송달	가.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	기안			○							
	나.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	기안			○							
14.과세자료 조사	가.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	기안			○							
	나. 과세자료 이동·변동사항 정비	기안	○									
	다. 토지·건축물 현황 일제조사	기안			○							
15.유관기관 협조업무	가. 재산조회 회신	기안			○							
	나. 과세자료 조회, 협조 요청	기안			○							
16.지방세 분야 비리방지	가. 지방세 비리방지 계획수립		기안							○		
	나. 부과·징수 취약분야 자체점검		기안			○						
17.세무조사	가.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		기안								○	
	나.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정		기안			○						
	다. 비과세·감면사항 사후조사	기안			○							
	라. 탈루세원 자료수집·조사	기안			○							
	마. 세무조사 규칙 제·개정		기안								○	
18.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대장관리	가. 세무조사 결과 통지	기안			○							
	나. 세원 조사실적 보고(월·분기별)	기안			○							
	다. 법인대장 작성관리	기안			○							
19.주택가격업무 기획	가. 주택가격조사 종합계획 수립		기안			○						
	나. 주택가격조사 종합 검토	기안			○							
20.주택가격관리	가. 표준주택가격 관리	기안			○							
	나. 주택가격 조사	기안			○							
	다.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	기안			○							
	라.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	기안									○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
		실무자	담당	담당·과장	실·국장	부구청장				실무자	담당	과장	국장	부구청장
	마.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	○					○ 세무1과							
	바.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운영		기안			○								
	사.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서 작성·검토	기안		○										
	가. 주택가격전산화 및 현황도 작성	기안		○										
21. 주택가격 전산화	나. 주택가격자료 처리 및 변동사항 정리	기안		○										
	다. 성과품작성 제출	기안		○										
	가.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	기안		○										
22. 주택가격 이의신청	가.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	기안		○										
23. 주택가격 열람	가. 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 통보	기안		○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
1. 세정 일반	가. 지방세정 총괄		기안											
	나.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	기안				○								
2. 금고 관리	다. 지방세 제도개선	기안		○										
	라. 세무공무원 증명서 발급	기안		○										
	가. 구급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체결		기안			○								
	나. 구급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및 감독	기안		○										
3. 기부금품 관리	가. 기부금품 모집 통제		기안			○								
4. 세무전산	가. 지방세 전산화 시책추진	기안				○								
	나. 지방세 전산실 기기 점검 및 운영	기안	○											
	다. 지방세 체납·통계 프로그램 운영	기안		○										
	라. 지방세 전산자료 관리	기안		○										
5. 세입 관리 및 결산	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	기안				○								
	나. 지방세 세입 결산	기안				○								
	다. 국세 세입 결산	기안				○								
	라.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	기안	○											
	마. 세입부 정리	기안	○											
6. 지방세 통계 및 세입 월보	가. 지방세 통계연감 총괄	기안				○								
	나. 지방세 세입 월보	기안				○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
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
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
실 무 자	담 당 자						
		다. 국세 세입 월보	기안		○		
7. 지방세 수납 사항 정리		가. 영수필통지서 관리	기안	○			
		나. 전산징수부 관리	기안	○			
8.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		가. 신용카드납부제 운영	기안		○		
		나.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	기안		○		
9. 지방세환급금 관리		가. 환급금 통지	기안	○			
		나. 환급금 반환 및 총당결의					
	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○		
	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
		다. 환급금 지급명령원부	기안		○		
10. 채권 관리		가. 채권 현재액 보고	기안		○		
11. 고향사랑기부제 운영		가.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종합기획	기안				○
		나.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·운영	기안				○
		다.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	기안				○
12. 지방세 부과 및 징수		가. 세목별 정기·수시분 부과	기안		○		
		나. 연부취득물건 자료수집 및 부과	기안		○		
		다. 자동차세 년·분납신고 처리	기안		○		
		라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	○		
		마. 징수유예					
		(1) 징수유예(2,000만원 이상)		기안		○	
		(2) 징수유예(2,000만원 미만)		기안		○	
		바. 물납, 분납에 관한 사항	기안		○		
13. 지방세 부과 관련 자치법규 운영		가. 제·개정에 관한 사항		기안			○
14. 지방세 통계		가.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	기안		○		
15. 지방세 소송		가.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		기안		○	
16. 위원회 운영		가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		기안			○

현 행	개 정 안						
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
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
실 무 자	담 당 자						
	17. 시가표준액 결정	가.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		기안			○
	18. 지방세 구제	가. 구세 이의신청 처리		기안		○	
		나. 구세 심사청구 진달		기안		○	
		다.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		기안	○		
	19. 세무민원처리	가. 비과세·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	기안		○		
		나.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	기안		○		
		다. 납기연장 신청 처리	기안		○		
		라.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	기안		○		
	20. 비과세·감면결정	가. 1억원 이상	기안			○	
		나. 1억원 미만	기안		○		
	21. 지방세 신고 납부처리	가.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
		나.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
	22. 고지서 송달	가.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	기안		○		
		나.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	기안		○		
	23. 과세자료 조사	가.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	기안		○		
		나. 과세자료 이동·변동사항 정비	기안	○			
		다. 토지·건축물 현황 일제조사	기안		○		
	24. 유관기관 협조업무	가. 재산조회 회신	기안		○		
		나. 과세자료 조회, 협조 요청	기안		○		
	25. 지방세 분야 비리방지	가. 지방세 비리방지 계획수립		기안			○
		나. 부과·징수 취약분야 자체점검		기안		○	
	26. 세무조사	가.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		기안			○
		나.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정		기안		○	
		다. 비과세·감면사항 사후조사	기안		○		
		라. 탈루세원 자료수집·조사	기안		○		
		마. 세무조사 규칙 제·개정		기안			○
	27. 세무조사 결과통지	가. 세무조사 결과 통지	기안		○		

현 행	개 정 안						
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
			담 당 자		과	국	
실 무 자	담 당 자	장	장	장			
및 대장관리	나. 세원 조사실적 보고(월·분기별)	기안		○			
	다. 법인대장 작성관리	기안		○			
28. 주택가격업무 기획	가. 주택가격조사 종합계획 수립		기안		○		
	나. 주택가격조사 종합 검토	기안		○			
29. 주택가격관리	가. 표준주택가격 관리	기안		○			
	나. 주택가격 조사	기안		○			
	다.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	기안		○			
	라.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	기안				○	
	마.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	○					
	바.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운영		기안			○	
	사.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서 작성·검토	기안		○			
30. 주택가격 전산화	가. 주택가격전산화 및 현황도 작성	기안		○			
	나. 주택가격자료 처리 및 변동사항 정리	기안		○			
	다. 성과품작성 제출	기안		○			
31. 주택가격 이의신청	가.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	기안		○			
32. 주택가격 열람	가. 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 통보	기안		○			
33. 징수·감액 결의	가. 징수결의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	나. 감액결의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다. 가산금·중가산금 조정	기안		○				

○ 세무2과

현 행	개 정 안					
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구 칭 장 결 재
			담 당 자 실 실행 자	과 장	국 장	
<신 설>	1. 체납세 징수 기획	가.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	기안			○
		나. 체납세 징수 목표액 책정	기안		○	
		다. 지방세 징수관련 제도개선	기안	○		
		라. 체납액 현황과악 및 분석	기안	○		
	2. 체납세 일반	가.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	기안	○		
		나.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	기안	○		
		다. 체납세 일보 및 월보	기안	○		
		라. 영수원부 관리	기안	○		
		마. 체납세 징수독려 및 기타 일반사항	기안	○		
		바. 체납관련 조례·규칙 제·개정사항	기안			○
	3. 체납자 규제	가. 체납자 관허사업제한	기안	○		
		나.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	기안	○		
		다. 조세범처벌에 관한 사항	기안	○		
		라.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	기안	○		
	4. 체납처분	가. 체납자 재산조회(조사)	기안	○		
		나.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	기안	○		
		다.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항	기안	○		
		라. 압류관련 각종 공부 관리	기안	○		
		마. 체납처분비 조정 및 징수				
		(1) 체납처분비 조정에 관한 사항	기안			○
	(2) 체납처분비 징수에 관한 사항	기안	○			
	5. 체납자 관리	가. 고액체납자 관리	기안	○		
		나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○		
		다. 체납자료 관리 및 전송	기안	○		
6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가. 번호판 영치 계획	기안	○			
	나. 번호판 영치 및 반환	기안	○			
	다. 미반환 번호판 정리	기안	○			

현 행	개 정 안					
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구 칭 장 결 재
			담 당 자 실 현 자	담 당 자	과 장	
7. 정리보류·시효완성 정리	가. 정리보류·시효완성정리결의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
	나. 정리보류자 사후관리	기안		○		
8. 지방세 제증명 발급	가.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접수 및 발급	○				
	나. 납세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발급	○				
9. 세정 일반	가.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	기안			○	
	나. 지방세 제도개선	기안		○		
10. 지방세 부과 및 징수	가. 세목별 정기·수시분 부과	기안		○		
	나.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	기안		○		
	다. 징수유예					
	(1) 징수유예(1,000만원 이상)		기안		○	
	(2) 징수유예(1,000만원 미만)		기안	○		
11.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운영	가. 제·개정에 관한 사항		기안			○
12. 지방세 통계	가.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	기안		○		
13. 지방세 소송	가.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		기안		○	
14. 지방세 구제	가. 구세 이의신청 처리		기안		○	
	나. 구세 심사청구 진달		기안		○	
	다.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		기안	○		
15. 세무민원처리	가. 비과세·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	기안		○		
	나.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	기안		○		
	다. 납기연장 신청 처리	기안		○		
	라.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	기안		○		
16. 비과세·감면결정	가. 1억원 이상	기안			○	
	나. 1억원 미만	기안		○		
17. 지방세 신고 납부 처리	가.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
	나.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	기안	○			
18. 고지서 송달	가.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	기안		○		
	나.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	기안		○		

현 행	개 정 안						
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
			담 당 자 실 현 자	담 당	과 장	국 장 부 국 청 장	
19. 과세자료 조사	가.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	기안		○			
	나. 과세자료 이동·변동사항 정비	기안	○				
20. 세입 관리 및 결산	가. 교부금·보조금·전입금 세입정리	기안		○			
	나.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	기안	○				
	다. 세입부 정리	기안	○				
21. 세외수입업무	가. 세외수입 총괄 지도·감독		기안		○		
	나. 수수료·사용료 현실화 추진		기안			○	
	다. 세외수입 통계작성	기안		○			
	라. 세외수입 세입전망 분석		기안		○		
22. 수입증지관리	가. 수입증지 수급운영 관리	기안		○			
	나. 수입증지 수불관리	기안	○				
23. 세외수입 관리	가. 세외수입 세입 결산	기안			○		
	나. 세외수입 징수 월보	기안		○			
	다.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관리	기안		○			
	라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	기안		○			
	마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	기안		○			
24.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	가. 신용카드납부제 운영	기안		○			
	나.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	기안		○			
25. 세외수입 환급금 관리	가. 환급금 통지	기안	○				
	나. 환급금 반환 및 총당결의						
	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1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다. 환급금 지급명령원부	기안		○				
26. 징수·감액 결의	가. 징수결의						
	(1) 5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
	(2) 5,000만원 미만	기안		○			
	나. 감액결의						
(1) 1,000만원 이상	기안			○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지원국 <input type="radio"/> 총무과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구 청 장 결 재		
								담 당 자		과 장		국 장	부 구 청 장
	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						(2) 1,000만원 미만		기안	○				
						다. 가산금·증가산금 조정		기안	○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지원국 <input type="radio"/> 주민자치과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구 청 장 결 재		
								담 당 자		과 장		국 장	부 구 청 장
	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1. ~ 20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
21. 공무원노조 지원					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					
22~ 33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
34. 공무원 등 관리						가. 공무원 관리 (1) 채용계획 및 임용 (2) 전보 (3) 징계 처분 (4) 현황 관리 및 보수 지급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		기안 기안 기안	기안	○	○		
35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지원국 <input type="radio"/> 총무과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구 청 장 결 재		
								담 당 자		과 장		국 장	부 구 청 장
	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1. ~ 20. (생략)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지원국 <input type="radio"/> 주민자치과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구 청 장 결 재		
								담 당 자		과 장		국 장	부 구 청 장
	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2. 민원 접수 및 처리						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민원서류 중 다수인(5인 이상) 관련민원		기안			○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부 구 청 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무자	담당							실무자	담당				
21. 공무원단체 지원	가. ~ 마. (생 략)														
22~ 33. (생 략)															
34. 공무원 등 관리	가. 공무원 현황 관리 및 보수지급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나. ~ 다. (생 략)	기안		○											
35. (생 략)															
○ 주민소통과							○ 문화체육과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청장결재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부 구 청 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무자	담당							실무자	담당				
1. (생 략)															
2. 민원 접수 및 처리	가. ~ 나. (생 략) 다. 민원서류 중 다수인 관련민원 (1) 5인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민원 (2) 5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민원 라. ~ 바. (생 략)	기안 기안				○									
3~ 38. (생 략) <신 설>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
○ 관광진흥과							○ 복지환경국 ○ 복지정책과								
○ 복지환경국							○ 복지정책과				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		
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	
		담당자		담당관·과장	실·국장				부구청장	담당자		과장		국장	부구청장
		실무자	담당							실무자	담당				
○ 문화체육과															
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	
1. ~ 62. (생략)															
63.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	가. (생략) 나. 시설 휴관에 관한 사항 다. (생략)	기안												○	
64. ~75. (생략)															
○ 관광진흥과															
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	
1. ~ 10. (생략)															
11. 수상레저기구	가. 수상레저기구 등록, 변경등록 사항 나.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다.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라. 수상레저사업(내수면) 등록, 변경등록	기안													
12.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	가.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나. 사업추진, 운영 및 사후관리 다.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	기안										○			
13. ~ 20. (생략)															
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단위업무	세부사무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	
1. 각종 위안행사 계획		기안					가. 구단위 노인 위안행사 개최		기안					○	
2. ~ 43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
○ 노인장애인과															
○ 가족정책과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복지환경국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복지지원과 (생 략) <input type="checkbox"/> 노인장애인과		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단 위 업 무</th> <th rowspan="3">세 부 사 무 명</th> <th colspan="5">기안 및 전결구분</th> <th rowspan="3">구 청 장 결 재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담 당 자</th> <th rowspan="2">과 장</th> <th rowspan="2">국 장</th> <th rowspan="2">부 구 청 장</th> </tr> <tr> <th>실 무 자</th> <th>담 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18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9. <삭 제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0. ~ 26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실 무 자	담 당	1. ~ 18. (현행과 같음)							19. <삭 제>							20. ~ 26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18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9. <삭 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. ~ 26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단 위 업 무</th> <th rowspan="3">세 부 사 무 명</th> <th colspan="5">기안 및 전결구분</th> <th rowspan="3">구 청 장 결 재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담 당 자</th> <th rowspan="2">과 장</th> <th rowspan="2">국 장</th> <th rowspan="2">부 구 청 장</th> </tr> <tr> <th>실 무 자</th> <th>담 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각종 위안행사 계획</td> <td>가. 구단위 노인·여성·아동 위안행사 개최</td> <td>기안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2. ~ 43. (생 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실 무 자	담 당	1. 각종 위안행사 계획	가. 구단위 노인·여성·아동 위안행사 개최	기안					○	2. ~ 43. (생 략)	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수산과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단 위 업 무</th> <th rowspan="3">세 부 사 무 명</th> <th colspan="5">기안 및 전결구분</th> <th rowspan="3">구 청 장 결 재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담 당 자</th> <th rowspan="2">과 장</th> <th rowspan="2">국 장</th> <th rowspan="2">부 구 청 장</th> </tr> <tr> <th>실 무 자</th> <th>담 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118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19. 수상레저기구</td> <td>가. 수상레저기구 등록, 변경등록 사항 나.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다.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라. 수상레저사업(내수면) 등록, 변경등록</td> <td>기안 기안 기안 기안</td> <td></td> <td>○ ○ ○ 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20. 어촌체험마을</td> <td>가.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나. 사업추진, 운영 및 사후관리 다.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</td> <td>기안 기안 기안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td>○ 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실 무 자	담 당	1. ~ 118. (현행과 같음)							119. 수상레저기구	가. 수상레저기구 등록, 변경등록 사항 나.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다.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라. 수상레저사업(내수면) 등록, 변경등록	기안 기안 기안 기안		○ ○ ○ ○			120. 어촌체험마을	가.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나. 사업추진, 운영 및 사후관리 다.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	기안 기안 기안		○		○ ○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		구 청 장 결 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각종 위안행사 계획	가. 구단위 노인·여성·아동 위안행사 개최	기안		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~ 43.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118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9. 수상레저기구	가. 수상레저기구 등록, 변경등록 사항 나.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다.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라. 수상레저사업(내수면) 등록, 변경등록	기안 기안 기안 기안		○ ○ ○ 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0. 어촌체험마을	가.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나. 사업추진, 운영 및 사후관리 다.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	기안 기안 기안		○		○ 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정책과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단 위 업 무</th> <th rowspan="3">세 부 사 무 명</th> <th colspan="5">기안 및 전결구분</th> <th rowspan="3">구 청 장 결 재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담 당 자</th> <th rowspan="2">과 장</th> <th rowspan="2">국 장</th> <th rowspan="2">부 구 청 장</th> </tr> <tr> <th>실 무 자</th> <th>담 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18. (생 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9.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</td> <td>가. 인구정책 시책 발굴 나.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다.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</td> <td>기안 기안</td> <td>기안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○ ○</td> </tr> <tr> <td>20. ~ 26. (생 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실 무 자	담 당	1. ~ 18. (생 략)							19.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가. 인구정책 시책 발굴 나.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다.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기안 기안	기안				○ ○	20. ~ 26. (생 략)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순환과 (현행과 같음)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건설국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총괄과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주택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		구 청 장 결 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18.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9.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가. 인구정책 시책 발굴 나.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다.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	기안 기안	기안				○ 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. ~ 26.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농수산과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단 위 업 무</th> <th rowspan="3">세 부 사 무 명</th> <th colspan="5">기안 및 전결구분</th> <th rowspan="3">구 청 장 결 재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담 당 자</th> <th rowspan="2">과 장</th> <th rowspan="2">국 장</th> <th rowspan="2">부 구 청 장</th> </tr> <tr> <th>실 무 자</th> <th>담 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실 무 자	담 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		구 청 장 결 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부 구 청 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1. ~ 118. (생 략)							1. ~ 62. (현행과 같음)								
<신 설>							63. 산업재해 예방	가.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나. 산업재해 예방 홍보 업무 추진 다.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 라.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	기안 기안 기안 기안		○		○	○	
<신 설>							64. 산업안전보건 관리	가.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 나. 산업안전보건관리 세부운영 계획 수립 다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.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	기안 기안 기안 기안				○	○	
○ 환경미화과 (생 략)							65.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	가. 중대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나. 중대재해 세부운영 계획 수립 다.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라.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 마.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 바. 중대재해 관련 일반사항	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				○	○	
□ 안전건설국 ○ 안전총괄과							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	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 장 결 재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부 구 청 장				담 당 자		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				실 무 자	담 당				
1. ~ 62. (생 략)							1. ~ 40. (생 략)								
<신 설>							41.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사무	가. (생 략) 나.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다. (생 략)	기안				○		
<신 설>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					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						
		실무자	담당									
○ 건축주택과												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청장결재						
		담 당 자		담 당 관 · 과 장	실 · 국 장							
		실무자	담당									
1. ~ 40. (생 략)												
41.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사무	가. (생 략) 나.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다. (생 략)	기안			으							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제10조(문서의 결재)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, 출장,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